눈 쌓이면 새벽에 나타나는 우리 동네 '雪벤져스' 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4일 새벽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인도에서 광산구 마을제설단원들이 쌓인 눈을 제설장비로 쓸고 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4일 새벽 6시께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광산구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한치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비장한 표정의 '광산구 월곡2동 마을제설단'이 속속 도착했다.

제설단원은 주민과 자율방재단, 통장단, 주민자치회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날은 총 10명이 행정복지센터 앞 제설 작업을 위해 모여들었다. 두꺼운 제설 복장과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장화 등으로 무장한 이들은 능숙하게 행정복지센터 내 창고에서 눈삽과 넉가래 등 제설장비를 꺼내들고 눈발을 헤치며 골목으로 향했다.

동이 트지 않아 깜깜한 새벽이었지만 제설단원들은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눈을 치워놔야 한다"며 어둠 속 눈 치우는 손길을 재촉했다.

고려인 마을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이민희(여·57)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부터 집을 나섰다.

이씨는 "잠을 떨치고 새벽에 나오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오르막에 있는 횡단보도 등 평소 미끄러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장소 위주로 눈을 치우다보니 뜻깊은 일에 동참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 이웃 주민들의 눈길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수있다면 다행"이라고 웃어보였다.

빌라 건물이 모여있는 폭 5m 남짓 좁은 골목은 영하권 날씨에 얼어붙고 덩어리째 뭉친 눈으로 한 걸음 내딛기조차 힘든 수준이었지만 제설단원 서너명이 달라붙어 넉가래로 밀고 눈삽으로 눈을 퍼내자 금세 새까만 아스팔트 바닥이 드러났다. 그 옆으로 염화칼슘을 실은 제설차량이 골목을 지나가자 제설단원들은 "차가 사람보다 10배 낫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눈 치우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마을제설단' 눈길

21개 동 주민 959명 참여
넉가래로 밀고 삽으로 퍼내고
출근시간 전 골목 곳곳 눈 치워
"눈길 안전 지키는 일 뿌듯해요"

오전 7시 출근 시간이 되자 골목으로 사람들과 차량이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설단원들은 치워진 도로 위를 가뿐하게 지나는 사람들을 보며 서로 뿌듯한 미소를 공유했다.

광산구 마을제설단은 구 전체 21개동에 모두 편성돼 있으며, 전체 단원은 959명에 달한다.

마을제설단은 아무리 제설차량 등 대형 장비를 이용해도 골목, 마을 길, 인도 등 눈이 잘 치워지지 않는 곳이 남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자기 마을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 뜻을 밝힌 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광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 자치구는 자율방재단 형식으로 골목 제설 작업을 진행한다.

마을제설단은 각 동에서 구역을 정해 두고 제설 작업을 하는데, 월곡2동 마을제설단의 경우 총 주민 33명이 5개 구역을 나눠 맡아 눈을 치운다. 비상근무 조치가 내려지면 단원들과 공무원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다.

제설단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작업을 마치고 얻는 자부심과 책임감, 뿌듯함이 더욱 크다고 입을 모았다.

노한복(67) 월곡2동 자율방재단 회장은 "도로가 얼어붙기 전에 빠르게 대처해서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눈길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말해줄 때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월곡2동 주민 노윤정(여·55)씨는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동네는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눈이 와서 올라가지 못하는 탑차를 밀어주고, 주변 눈을 쓸어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등 보람찬 일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재은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장은 "폭설 등으로 비상근무가 내려졌을 때 10명 남짓 공무원들이 월곡2동 모든 골목을 살피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새벽에 골목을 치워주시는 마을 방제단원 분들이 있어서 골목 골목까지 안전하게 챙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화제의 판결

인도 설치 변전기 부딪혀 시각장애인 다쳤다면

법원 "한전·목포시 100만원 배상"…변전기도 다른 곳으로 옮겨

인도에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다친 시각장애인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4일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남해광)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전과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목포시 옥암동 인도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치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액으로 200만원을 청구했다.

또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차별적 취급이라며 해당 변전기를 제거하거나 방호 설비의 설치 등 시정조치도 청구했다. 실제 인도(폭 2m)에 설치된 변전기를 제외한 보행 구간의 폭은 75㎝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 측은 지난해 5월께 변전기 모서리에 임시로 충격 흡수를 위한 보호장비를 부착하고 안전을 위한 방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보호장비는 근본적인 차별행위를 시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한전측은 지난해 10월께 해당 변전기를 다른 장소로 옮겼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목포시와 한전이 인도의 유효보도폭 2m를 확보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장애인과 교통 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보행로에 무단 방치·설치된 전동킥보드, 볼라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목포 시내 87개 보행로에 설치된 변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추진하고,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교무부장 지위 이용 기간제 교사 성추행한 교사 실형

광주지법, 징역 6월 선고

교무부장 지위를 이용해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한상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29일 오후 6시께 같이 출장을 간 기간제 교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역 한 고교 교무부장인 A씨는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교사 B씨와 당일 생활기록부 기재 등에 관한 업무연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연수 후 근처 카페에 가자"고 권유해 산책을 하다 "남자 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하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상 B씨를 보호·감독할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결재라인에 교무 기획부 소속 교무부장이 있었다는 점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 위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위증죄 처벌을 무릅쓰고 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B씨가 보낸 피해사실 문자를 A씨가 인정하기도 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문대 교직원 채용 속여 6000만원 챙긴 일당 실형

2명 징역 8월씩 선고

자녀를 전남의 한 전문대 교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B(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녀를 전남의 한 전문대 교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부모들을 속여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라면서 "곧 인수할 예정이고, A씨가 총장으로 가고 B씨가 행정실 책임자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자녀를 교직원으로 취직시키기 위해 청탁성 금품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전모의를 토대로 역할을 분담해 대학교 교직원 취업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는 등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